



: 2020-01-21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노1449 사기
피 고 인 1. A
2. B
항 소 인 검사
검 사 전유경(기소), 전우진(공판)
변 호 인 범무법인 공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옥형, 안성준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8. 10. 선고 2017고단1030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9. 1. 16. 선고 2018노2553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226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1. 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인건비를 청구하더라도 연구원들에게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마치 인건비 전액을 연구원들에게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3.경 C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D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C대학교 식품공학과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2016. 9. 23.경까지 C대학교 D의 연구전임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피해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C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정부부처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 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F)를 별도로 개설하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위 계좌(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라 한다)로 회수하여 공동 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개인 논문게재료, 연



구실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연구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A이 수행하는 'H'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I에게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송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위 I의 J은행 계좌에 인건비 전액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담당자가 위 I 명의의 J은행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여 주더라도 그중 일부를 I로부터 회수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서 공동 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I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연구원 I의 인건비 명목으로 2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287,225원(송금받은 금원 중 인건비로 실제로 지급한 28,493,9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실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를 편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인건비 지급방식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를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의 운영에 관하여 연구원들 사이에 특별한 이의가 없었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연구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인건비 총액이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한 인건비는 모두 그 용도대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가 운영·관리되었고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서 인건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일부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피고인들이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임에도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로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은 C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그 소속 연구원들이 연구과제가 많은 기간에는 충분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연구과제가 없는 기간에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고, 연구과제가 있는 기간에도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없거나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수가 적은 연구원의 경우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계비조차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경 전임연구원이었던 피고인 B에게 연구원 인건비의 공동관리를 제안하고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와 D 명의의 E은행 계좌의 관리를 위탁하였다.

② 피고인 B은 2007년경 당시 소속 연구원들의 양해 하에 자신 명의의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위 2개 계좌를 포함한 3개의 계좌를 소속 연구원들의 공동관리 계좌로 운영·관리해 왔고, 피고인 A에게 소속된 연구원들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인건비를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송금한 후,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서 월별로 일정하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받아 왔는데,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소속 연구원들이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의 운영에 이의를 제기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③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를 포함한 공동관리 계좌는 피고인 B을 시작으로 하여 행정담당으로 지정된 연구원들이 입·출금 업무를 맡는 등 관리해 왔다.

④ 이후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D의 전임연구교수로 근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은 2013. 12.경부터 D의 센터장을 겸임하게 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는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되어 왔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2013. 11. 25. ~ 2016. 1. 27.) 동안 피해자가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 중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된 액수는 총 93,205,800



원이고, 같은 기간 공동관리 계좌에서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총액은 95,937,962 원으로 연구원들에게 실제 지급된 인건비 액수가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로 회수된 액수를 초과한다.

⑥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의 운영을 제안한 2007년경부터 2016. 1.경까지 총 18,705,000원의 개인 돈을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에 입금하여 연구원들의 인건비 지급에 충당해 왔고, 2013. 2.경부터 2015.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동관리 계좌의 돈 중 인건비가 아닌 연구실 회식비, 유류비, 피고인들의 출장비, 항공료, 논문 게재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된 액수는 총 10,323,700원이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 현 _____

 판사 황경환 _____

 판사 조상은 _____



: 2020-01-21

[범직일람표 1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	인건비 입금액	기방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편취금액
1	2014.12.24	15년1월분 인건비				1,465,69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 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4.16. ~ 2015.4.21.	4,500,000	4,500,000
2	2014.12.24	15년2월분 인건비			2015.4.14, 1,465,690					
3	2014.12.24	15년3월분 인건비			1,474,250					
4	2014.12.24	15년4월분 인건비			2015.4.17, 1,465,690					
5	2014.12.24	15년10월분 인건비			2015.10.16, 1,051,53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 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10.26.	2,000,000	2,000,000	
6	2014.12.24	연구수당			2015.10.23, 956,000					
7	2014.12.24	15년10월분 인건비			1,152,345					
8	2015.10.24	15년10월분 인건비			412,9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 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6.1.29.	5,000,000	4,805,820	
9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2016.1.27, 1,464,440					
10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1,464,040					
11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1,464,440					
합계						13,837,015			11,500,000	11,305,820



: 2020-01-21

[범직일람표 2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편취금액
1	2013.12.24	14년12월분 인건비			2014.12.17.	713,22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12.31.	1,200,000	1,200,000
2	2013.12.24	14년12월분 인건비			2014.12.23.	1,434,000				
3	2014.12.24	14년12월분 인건비			2015. 4. 9.	335,49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4.16. 2015. 5.13.	3,000,000	3,000,000
4	2014.12.24	15년2월분 인건비				1,259,150				
5	2014.12.24	15년1월분 인건비				1,259,150				
6	2014.12.24	15년3월분 인건비				1,261,200				
7	2014.12.24	15년4월분 인건비			2015. 4.17.	1,259,150				
8	2014.12.24	15년5월분 인건비			2015. 5.15.	1,259,150				
9	2015.10.24	15년10월분 인건비			2016. 1.27.	335,48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6. 1.29. 2016. 2. 1.	4,400,000	4,112,610
10	2015.10.24	15년 11월분 인건비				1,259,150				
11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1,259,150				
12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1,258,830				
합계						12,893,120			8,600,000	8,312,610



[범직일람표 3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편취금액
1	2013.11.21	인센티브			2013.11.22.	1,80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3.11.27.	900,000	900,000
2	2013.11.01	13년11월분 인건비			2013.11.25.	243,000				
3	2013.12.24	14년2월분 인건비			2014. 3.17.	232,14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 3.26.	3,390,000	3,390,000
4	2013.12.24	14년3월분 인건비				1,197,860				
5	2013.12.24	14년1월분 인건비			1,462,680					
6	2013.12.24	13년12월분 인건비			2014. 3.20.	377,470				
7	2013.12.24	14년2월분 인건비			1,085,230					
8	2013.12.24	14년6월분 인건비			2014. 6.17.	1,197,860				
9	2014.01.01	14년6월분 인건비			200,000					
10	2014.04.01	14년4월분 인건비			2014. 6.25.	18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 6.27.	540,000	540,000
11	2014.04.01	14년5월분 인건비				180,000				
12	2014.04.01	14년6월분 인건비				180,000				
13	2013.12.24	14년8월분 인건비			2014. 8.14.	1,197,86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 8.27.	658,000	658,000
14	2014.04.01	14년8월분 인건비			2014. 8.25.	180,000				
15	2014.01.01	14년8월분 인건비			200,000					
16	2014.08.20	인센티브			2014. 8.27.	478,000				



[범직일람표 4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원취금액
1	2014.12.24	15년9월분 인건비			2015. 9.25.	812,6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10.24.	860,000	860,000
2	2014.12.24	15년10월분 인건비			2015.10.23.	812,600				
3	2015.11.12	16년1월분 인건비				334,6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6.1.27.	1,673,000	1,673,000
4	2015.11.12	15년11월분 인건비			2016. 1.25	334,600				
5	2015.11.12	15년12월분 인건비				334,600				
6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334,600				
7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2016. 1.27.	334,600				
8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334,600				
합계						3,632,800			2,533,000	2,533,000



[범직일람표 5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편취금액	
1	2014.12.24	15년3월분 인건비			2015. 4. 9.	1,003,8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2015. 4.10.	-	1,633,000	1,633,000
2	2014.12.24	15년4월분 인건비			2015. 4.24.	1,003,800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4.28.			
3	2014.12.24	15년5월분 인건비			2015. 5.22.	1,003,8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5.26.	1,343,000	1,003,800	
4	2014.12.24	15년6월분 인건비			2015. 6.25.	956,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6.26.	643,000	643,000	
5	2014.12.24	15년7월분 인건비			2015. 7.24.	956,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7.28.	643,000	643,000	
6	2014.12.24	15년8월분 인건비			2015. 8.25.	956,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8.27.	645,000	645,000	
7	2014.12.24	15년9월분 인건비			2015. 9.25.	956,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9.30.	489,000	489,000	
8	2015.10.08	인센티브			2015.10.21.	20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2015.10.26.	880,000	880,000	
9	2014.12.24	15년10월 분 인건비			2015.10.23.	956,000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 2020-01-21

10	2015.11.12	15년12월 분 인건비				382,4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6. 1.28.	1,470,000	1,470,000
11	2015.11.12	16년1월분 인건비			2016. 1.25.	382,400				
12	2015.11.12	15년11월 분인건비				382,400				
13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200,000				
14	2015.10.24	15년11월 분 인건비			2016. 1.27.	200,000				
15	2015.10.24	15년12월 분 인건비				200,000				
합계						9,738,600			7,737,000	6,753,445



: 2020-01-21

[범직알림표 6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편위금액
1	2014.12.24	15년9월분 인건비			2015.9.25	648,08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10.2	350,000	350,000
2	2014.12.24	15년10월분 인건비			2015.10.23	848,08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11.1	500,000	500,000
3	2015.11.12	15년11월분 인건비				334,600				
4	2015.11.12	15년12월분 인건비				334,600				
5	2015.11.12	16년1월분 인건비				334,6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6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200,000				
7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200,000				
8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200,000				
합계						3,299,960			2,150,000	2,150,000



[범직일람표 7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원취금액
1	2014.12.24	15년1월분 인건비				3,004,41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5. 6.	9,000,000	9,000,000
2	2014.12.24	15년2월분 인건비			3,004,410					
3	2014.12.24	15년3월분 인건비			3,113,620					
4	2015.10.08	인센티브			2015.10.16.	1,147,2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11. 5.	1,500,000	1,500,000
5	2015.10.08	인센티브			2015.10.21.	1,625,200				
6	2015.10.24	15년10월분 인건비				645,16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6. 2.19.	8,300,000	7,505,880
7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2016. 1.27.	2,287,120				
8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2,287,120				
9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2,286,480				
합계						19,400,720			18,800,000	18,006,880



[범직일람표 8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잔액금액
1	2013.12.24	14년2월분 인건비				2,174,9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3.25.	4,100,000	4,100,000
2	2013.12.24	14년1월분 인건비			2,174,900					
3	2013.12.24	13년12월분 인건비			561,280					
4	2013.12.24	14년3월분 인건비			2014.4.9.	740,9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4.26.	600,000	600,000
5	2013.12.24	14년4월분 인건비			2014.4.25.	740,900				
6	2013.12.24	14년7월분 인건비			2014.7.25.	740,9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7.22.	1,490,000	740,900
7	2014.06.01	14년8월분 인건비			2014.9.25.	956,000				
8	2013.12.24	14년9월분 인건비			2014.9.25.	740,9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9.26.	880,000	880,000
9	2014.06.01	14년10월분 인건비			2014.10.24.	956,000				
10	2013.12.24	14년11월분 인건비			2014.11.25.	956,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11.25.	400,000	400,000
11	2013.12.24	14년11월분 인건비			2014.11.25.	262,900				
12	2014.06.01	인센티브			2014.12.4.	15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12.9.	1,600,000	1,600,000
13	2013.12.24	인센티브			2014.12.17.	1,336,400				



14	2014.06.01	14년12월분 인건비	2014.12.24	956,000				
15	2014.01.01	14년12월분 인건비	2014.12.26	204,030				
16	2014.12.24	14년12월분 인건비		100,000				
17	2014.12.24	15년1월분 인건비	2015. 4. 6.	764,800				
18	2014.12.24	15년2월분 인건비		764,800				
19	2014.12.24	15년3월분 인건비	2015. 4. 9.	812,600				
20	2014.12.24	15년4월분 인건비		812,60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2015. 4.25.		
21	2014.06.01	15년4월분 인건비	2015. 4.24.	956,000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 5.26.	4,930,000	4,930,000
22	2014.06.01	15년5월분 인건비		956,000				
23	2014.12.24	15년5월분 인건비	2015. 5.22.	812,600				
24	2014.06.01	인센티브	2015. 5.27.	150,000				
25	2014.12.24	15년8월분 인건비	2015. 9.17.	419,35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2015.9.17.	700,000	700,000
26	2014.12.24	15년9월분 인건비		1,203,920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7	2015.10.24	15년10월분 인건비		587,100				
28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2016.1.27.	1,397,45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2016.1.28.	4,542,000	4,542,000
29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1,390,980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30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1,397,080				
합계				25,979,290			19,642,000	18,892,900



: 2020-01-21

[범칙일람표 9 - □]

(금액단위 : 원)

연번	정기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	인건비 입금액	기망방법	회수일자	회수금액	편위금액
1	2015.11.12	15년12월분 인건비				305,920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 에도 인건비를 전액 지급 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6. 1.28.	1,610,000	1,610,000
2	2015.11.12	16년1월분 인건비			2016.1.25.	305,920				
3	2015.11.12	15년11월분 인건비				305,920				
4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334,600				
5	2015.10.24	16년1월분 인건비			2016. 1.27.	334,600				
6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334,600				
합계						1,921,560			1,610,000	1,610,000



: 2020-01-21

[범직일람표 10 -]

(금액 단위 : 원)

연번	청구일자	지급명목	연구과제	인건비 입금계좌	인건비 입금일자	인건비 입금액	기망생일	회수일자	회수금액	잔액금액
1	2013.12.24	14년 1월분 인건비				20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3.29.	500,000	451,610
2	2013.12.24	14년 2월분 인건비			200,000					
3	2013.12.24	13년12월분 인건비			51,610					
4	2013.12.24	14년 3월분 인건비				535,36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4.28.	900,000	900,000
5	2013.12.24	14년 4월분 인건비			535,360					
6	2014.01.01	14년11월분 인건비				535,36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4.11.27.	795,800	795,800
7	2014.06.01	14년11월분 인건비			258,120					
8	2014.06.01	15년1월분 인건비				258,12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1.25.	400,000	258,120
9	2014.06.01	15년2월분 인건비			258,120					
10	2014.06.01	15년3월분 인건비				258,12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4.28.	1,000,000	1,000,000
11	2014.12.24	15년2월분 인건비			200,000					
12	2014.12.24	15년1월분 인건비			200,000					



: 2020-01-21

13	2014.12.24	15년3월분 인건비			2015. 4. 9.	200,000				
14	2014.12.24	15년4월분 인건비			2015. 4.24.	200,000				
15	2014.06.01	15년4월분 인건비				258,120				
16	2014.06.01	15년5월분 인건비				258,120				
17	2014.12.24	15년5월분 인건비			2015. 5.22.	200,000				
18	2015.05.26	인센티브			2015. 5.27.	20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015.6.26.	200,000	200,000
19	2014.12.24	15년6월분 인건비			2015. 6.25.	200,000				
20	2014.12.24	15년7월분 인건비			2015. 7.24.	20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1	2014.12.24	15년8월분 인건비			2015. 8.25.	200,000		2015.8.29.	100,000	100,000
22	2014.12.24	15년9월분 인건비			2015. 9.25.	200,00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것처럼 허위 청구			
23	2015.10.08	인센티브			2015.10.16.	764,800		2015.10.29.	1,200,000	1,164,800



: 2020-01-21

24	2014.12.24	15년10월분 인건비			2015.10.23.	200,000				
25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2016. 1.27.	334,600	참여연구원에게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2016.1.24.		
26	2015.10.24	15년12월분 인건비				334,600	의사가 없음에도 인 건비를 전액 지급할	-	1,250,000	1,003,800
27	2015.10.24	15년11월분 인건비				334,600	첫처벌 허위 청구	2016.1.27.		
합계						7,575,010			6,345,800	5,874,130